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12.11.)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6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3
8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나. 발 의 자 :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이홍희, 김향란,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2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라.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 정비(안 별표)

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한 항목 삭제(안 제2조)

나.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 강화규정 신설(안 제7조)

1)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

3)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다. 명예수당 지급대상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안 제10조)

- 1)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유족 등 ⇒ 국가보훈대상자
- 2) 공상군경 본인, 독립유공자 수권자 등 수혜 대상자 증가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
- 나. 현재 거창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이 6.25참전 등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전 보훈대상자로 확대 지원(수당, 종량제봉투, 순례사업 등)을 위한 조례개정임.
- 다.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개정이유

- 우리 군 인구증가대책 추진 강화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전입 장려를 위하여 생활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제6호)
둘째아이 이상 50만원 ⇒ 첫째아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50만원
- 나. 전입대학생에 대한 생활관비 지원(안 제20조제1항제9호)
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4번,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본 조례는 저 출산, 이농, 고령화, 사망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거창군이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나. 출상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둘째아이 이상에서 모든 출생아로 확대하여 친화적 환경조성과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 다. 아울러 도립거창대학교와 승강기대학 등 전입 기숙학생들에게 인센티브(생활관비)를 제공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라.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청년창업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임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와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2조)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일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규정 신설
-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직접 장소를 지정 신청할 경우 신청서식 등을 신설함(안 제3조)
-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5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일부 개정된 사항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 완화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나. 개정된 내용으로는 영업장소의 선택권부여, 모집방법의 투명성 확보, 청년실업·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기준 마련 등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음.
- 다.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개정부칙에서 이미 운영 중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에 따라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2023년 12월 31일
- 나. 법령 재기재사항 등 정비함(현행 제6조, 제7조, 제9조제2항)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본 조례의 목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 나.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 중 해당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임.
- 다. 그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개선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음.
- 라.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신설하여 명시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였음.
- 마.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개정이유

- 입법체계나 입법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중복·재기재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전부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규정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중복·재기재한 사항 삭제 정비함
-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함(안 제5조)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977년도 설치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현금급여비, 진료비, 관리비 등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나.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제정법」 제9조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군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존속기간 연장 동의를 하였음.

다. 개정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관련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임.

라.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자의 관광지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제4항)
 - 1)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2)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
- 나.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추가함(안 별표 2)
 - 계약체결 그날 예약을 취소할 때 : 이용료 전액 반환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수승대는 야영장, 오토캠핑장, 썰매장, 문화재 등이 존재하는 거창의 대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으나, 유공자나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 감경근거가 없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
- 나. 개정 내용으로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감경사항을 반영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가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고 격려해야 할 대상자에게 관광지 이용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 다.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조성

1. 제안이유

-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교통혼잡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차 등 민원발생 지역으로 터미널 이용객 불편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

2. 취득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1.(3년간)
-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596번지 일원
- 취득면적 : 2,930㎡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군비 750, 지특 750)

※ 군비 2019년도 예산 편성, 2020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 계획

3.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930	346,618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596	답	1,678	198,507	2019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 부지매입	이*희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597-1	답	588	69,560	2020		이*희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597-6	답	664	78,551	2020		이*희

※ 기준가격 : 공지시가 × 면적

4. 위치도 및 지적도



㉒ 가수정(假睡亭) 주변 다목적 쉼터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름 휴식처로 사용하던 장소를 기념하여 가수정이라 이름 짓고 바위에 새긴 역사가 있는 자연 유원지이며,
- 큰 일교차에 의한 고당도 해파지(고제) 사과 매입을 위한 도매 및 직거래 상인 등 고제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물놀이를 위한 가수정 방문 관광객이 증가 추세
- 가수정 주변 다목적 쉼터를 조성하여 고제 대표 쉼터로 활용 및 해파지 사과 판매장소로 활용

2. 취득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440-1번지 일원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잔디블럭 주차장, 잔디광장, 벤치, 하천보, 출렁다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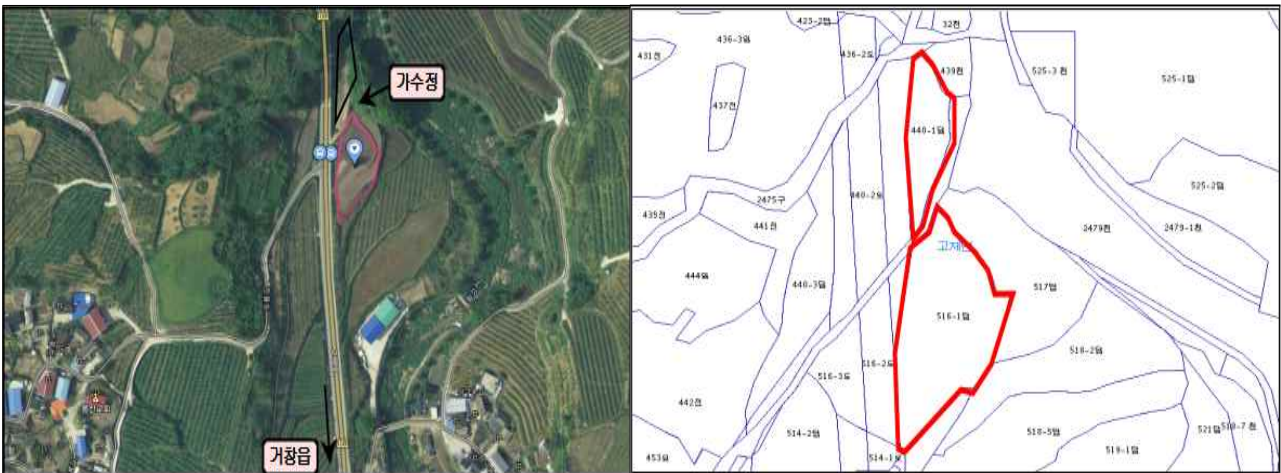
3.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814	15,345			
취득	토지	고제면 봉산리 440-1	답	445	3,764	2019	가수정 주변 다목적쉼터조성	변*식
취득	토지	고제면 봉산리 516-1	답	1,369	11,581	2019	가수정 주변 다목적쉼터조성	김*주

※ 기준가격 : 공지시가 × 면적

4. 위치도 및 지적도



③ 거열산성 군립공원 조성사업 사유지 매입

1. 제안이유

- 최근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은 행위제한 및 재산상 손해 등 민원을 우려하여 사유지를 최대한 배제(공원 축소·해제 등)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극 매입하는 추세임

- 거열산성 군립공원의 자연생태계·문화경관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취득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49-1 외 1
- 토지면적 : 3,461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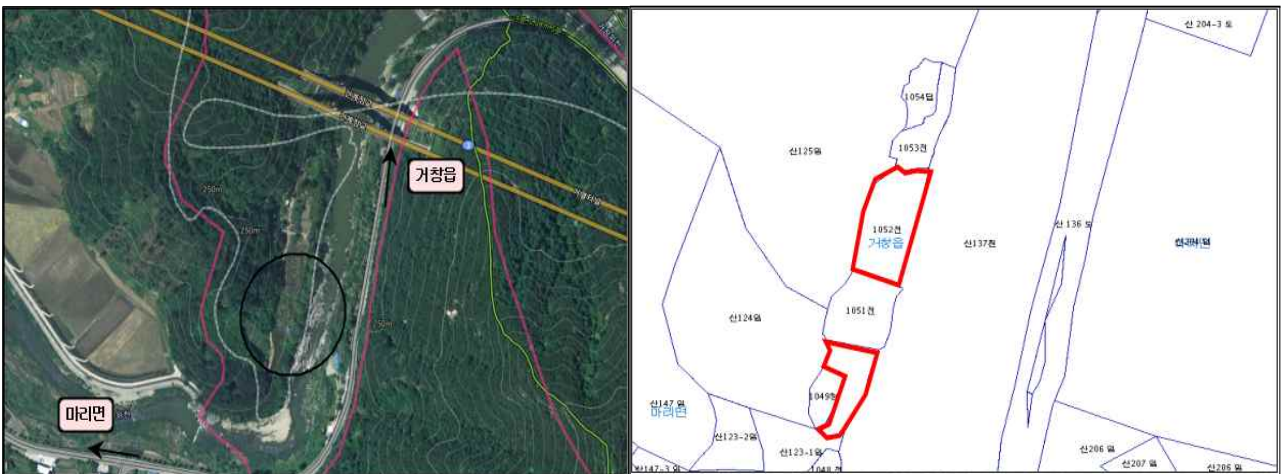
3.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461	50,184			
취득	토지	거창읍 송정리 1049-1	전	1,170	16,965	2019	자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신*범
취득	토지	거창읍 송정리 1052	전	2,291	33,219	2019	자연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	신*범

※ 기준가격 : 공시시가 × 면적

4. 위치도 및 지적도



④ 다목적체육관 건립

1. 제안이유

-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

2. 취득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92 외 4필지
- 대지면적 : 8,749m² (토지소유자 : 박진효 외 4인)
- 건축규모 : 지상 1층 체육관(연면적 2,541m²)
- 사업기간 : 2019. 3. ~ 2021. 12.
- 사 업 비 : 9,900백만원(부지매입비 : 1,600백만원)
- 주요기능 :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로 활용

3.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 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8,749	226,599,100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1092	답	661	17,119,900	2019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박*효
		거창읍 양평리 1092-1	답	2,106	54,545,400			이*원
		거창읍 양평리 1092-2	답	2,098	54,338,200			이*백
		거창읍 양평리 1125-7	답	2,035	52,706,500			신*성
		거창읍 양평리 1125-6	답	1,849	47,889,100			신*범

※ 기준가격 : 공지시가 × 면적

4 위치도 및 지적도



⑤ 축구전용구장 조성

1. 제안이유

-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축구전용구장 조성 및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취득

2. 취득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85-4 외 32필지
- 대지면적 : 42,717m² (토지소유자 : 이종환 외 23인)
- 사업기간 : 2019. 7. ~ 2021. 12.
- 사 업 비 : 8,000백만원(부지매입비 : 4,100백만원 정도)
- 주요기능 : 축구전용구장(110m×75m)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

3. 취득재산의 표시

- 거창읍 양평리 1085-4번지 등 33필지, 42,717m²

4. 위치도 및 지적도



3. 전문위원 검토요지

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조성

- 가. 거창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나.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다중이 이용하는 곳으로 교통혼잡과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편 초래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
- 다. 이에 접근성이 양호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② 가수정(假睡亭) 주변 다목적 쉼터 조성사업

- 가. 가수정은 약200년 전에 수암 변사은 등 사대부들이 여름휴식처로 사용하던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금도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음.
- 나. 쉼터제공을 위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가수정 주변정비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 다. 고제 해따지 사과 판매 계약 장소 활용을 위한 부지매입은 향후 부대시설 설치 시 활용의 효율성, 관리방안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③ 거열산성 군립공원 조성사업 사유지 매입

- 가. 거열산성군립공원 내에 있는 건계정은 고풍스런 정자, 맑은 물이 굽어 도는 물길과 숲이 어우러진 빼어난 명소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산임.
- 나.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 토지는 자연공원(군립) 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다. 또한, 장백마을에서 건계정으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없어 접근성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라. 매입 대상필지 인근 토지는 거창군에서 기 매수하였으며, 군립공원의 문화경관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유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검토됨.

④ 다목적체육관 건립

- 가. 스포츠파크 내 입지한 실내체육관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불편은 물론 전국 실내경기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나. 현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으로는 군민들의 여가생활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큰 거창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파크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별도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요구됨.
- 다. 다만, 부지확보 후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⑤ 축구전용구장 조성

- 가. 스포츠파크 내 축구전용구장은 주경기장을 포함하여 3면으로 축구동호인과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함께 이용을 하고 있으나,
- 나. 현 시설로는 전지훈련과 전국(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에는 한계가 있어 시대적 발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도 미흡한 실정임.
- 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체육 동호인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축구전용구장 조성(2개소) 부지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11. 23.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11. 2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2. 10.

2. 요구이유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거창시니어클럽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4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거창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시니어클럽
- 나. 시설기준
 - 1)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1실 이상
 - 2) 노인일자리 사업장(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 1개 이상
 - 3) 시설의 규모 : 연면적이 100㎡ 이상(사무실 및 사업장 등)

다. 사업내용 : 거창시니어클럽 운영

라. 위탁대상 사무

○ 운영

-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 제조 판매형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각종 교육 훈련
-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지역 연대 강화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항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등
- 그 외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탁 한 사항

마. 위탁기간 : 2019. 3. 21. ~ 2024. 3. 20.(5년)

바.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아. 소요예산

- 거창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4.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거창군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거창시니어클럽이 2013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유지와 함께 활기찬 노후정착에 기여하여 왔음.

나. 본 동의안은 거창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전문기관에 재 위탁하려는 것임.

다.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